

## 国会事務処法改正法律案

議案 番号	
----------	--

提案年月日：1981. 1. .

提案者：運營委員長

### 1. 提案経緯

가. 1981. 1. 20 第10次 運營委員會에서 国会事務処  
法改正法律案을 委員會案으로 提案하기 위하여 改正  
案 起草小委員會(徐東烈委員, 金永均委員, 鄭泰秀委員)  
를 構成하여 이를 委任한 바 있음.

나. 1981. 1. 29 第11次 運營委員會에서 法律案起草  
小委員長(徐東烈委員)으로 부터 小委員會에서 成案  
한 国会事務処法改正法律案에 대한 報告를 듣고 이  
를 審査한 후 運營委員會案으로 採択하기로 原案  
議決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体系와 字句의 審査를  
받았음.

### 2. 提案理由

国会法の 改正에 따라, 国会事務処法の 改正과 国  
会圖書館法の 廢止가 不可避해졌을 뿐만 아니라 国会  
立法活動의 보다 能率的인 支援을 위하여 国会事務処  
法을 全面 改正하려는 것임.

이 法을 改正함에 있어서 基本方向은 人力을 合理的  
으로 活用하고, 事務処 内部機關間의 有機的인 協調体  
制을 形成하며, 国会公務員의 職級을 中央行政機關과

**공백**

均衡을 이루도록 하는데 두었음.

### 3. 主要骨子

가. 事務總長 所屬下에 圖書館을 두되 그 機能은

獨立시킴 (案第 2 条·第 11 条 내지 第 15 条)

나. 事務次長과 圖書館長은 事務總長의 提請에 의하여

議長이 任免토록 함. (案第 5 条·第 12 条)

다. 局長은 2 級, 課長은 3 級甲類로 補함.

(案第 7 条·第 13 条)

라. 委員會에 專門委員·立法審議官·立法調査官 기타

필요한 公務員을 두고 職務上으로는 所屬委員長의,

服務上으로는 事務總長의 指揮·監督을 받게 함.

(案第 8 条·第 9 条)

마. 国会圖書館法은 廢止하고 國家保衛立法會議과 새로

構成되는 国会와의 有機的인 連結을 위하여 經過規

定을 두었음. (案附則 ②項 내지 ④項)

공백

法律 第 号

国会事務処法改正法律案

国会事務処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国会事務処法

第 1 章 總 則

第 1 条 (目的) 이 법은 国会事務処 (이하 "事務処" 라 한다) 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条 (職務) ①事務処는 議長의 指揮·監督下에 国会의 會議와 運營에 관련된 事務를 담당한다.

②事務処에 図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国会圖書館 (이하 "圖書館" 이라 한다) 을 둔다.

第 3 条 (公務員의 任用) ①事務処에 事務總長 이외에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.

② 3 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. 다만,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, 事務總長은 事務次長 또는 圖書館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.

공백

## 第2章 事務處

第4條(事務總長) ①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·監督한다.

②事務總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
第5條(事務次長) ①事務處에 事務次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.

②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處務(圖書館業務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.

③事務次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
第6條(議長秘書室) ①議長의 秘書業務와 기타 이에 關連된 事項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議長秘書室을 둔다.

②議長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
第7條(組織과 名稱) ①事務處(圖書館을 제외한다)의 補助機關의 名稱은 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.

②事務總長 및 事務次長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事務次長 밑에 局長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둘 수 있다.

공백



- ③局長은 2級, 課長은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, 担当官은 2級 또는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
- ④局·課및 担当官의 種類·定員·分掌事務 와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.

### 第3章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

- 第8条 (委員會의 公務員) ①委員會에 專門委員 1人과 立法審議官·立法調査官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. 다만,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 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.
- ②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- ③立法審議官은 2級, 立法調査官은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한다.
- ④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.

- 第9条 (專門委員의 職務) ①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

**공백**

員長의 指揮를 받아 議案의 審査 및 議事進行을 補助하고 그 委員會所屬公務員을 指揮·監督한다.

②立法審議官은 그 委員會의 專門委員이 事故가 있거나 委員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.

第 10 条 (資料要請) 專門委員은 그 職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는 圖書館長에게 資料의 제공을 要請할 수 있다.

#### 第 4 章 圖 書 館

第 11 条 (任務) 圖書館은 國會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立法資料를 議員 및 專門委員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保存하여 圖書館奉仕를 행함을 그 任務로 한다.

第 12 条 (圖書館長) ①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.

②圖書館長은 事務總長의 監督을 받아 圖書館業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·監督한다.

공백

③ 圖書館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
第 13 条 (組織과 名称) ① 圖書館의 補助機關의 名称은 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.

② 圖書館長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担当官을 둘 수 있으며 圖書館長 밑에 局長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 1 個를 둘 수 있다.

③ 局長은 2 級, 課長은 3 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, 担当官은 2 級乙類 또는 3 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

④ 局·課 및 担当官의 種類·定員·分掌事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 14 条 (諸資料의 納本) ①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立法活動·國家政策樹立 또는 國際交換에 필요한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그 機關은 發行日로부터 30 日 이내 에 그 刊行物을 圖書館에 納本하 여야 한다.

② 國家機關 및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圖

공백

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圖書館長은 이를 圖書館에 納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圖書館長은 當該 出版物에 所要한 費用에 相當한 金額을 그 代金으로 支給한다.

第15條(寄贈) 圖書館長은 物品 또는 金錢의 寄贈이 있을 때에는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받을 수 있다.

#### 第5章 補 則

第16條(法人의 設立) ①議長은 議會制度의 發展을 期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調査·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設立하게 할 수 있다.

②議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法人에 대하여 出捐金を 交付할 수 있다.

第17條(時差制 勤務)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중에 限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.

第18條(規則制定)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 정하도록

공백



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国会運営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.

### 附 則

- ①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.
- ②(廢止法律) 国会図書館法은 이를 廢止한다.
- ③(經過措置) 이 法에 의한 国会의 事務處 및 図書館은 国家保衛立法會議의 事務處 및 図書館으로 본다.
- ④(同前) 国家保衛立法會議所属公務員은 憲法에 의하여 새로 構成되는 国会의 最初の 集會日에 그 職級에 相応하는 国会所属公務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.

**공백**